

#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여비규정

2020. 9. 14. 제 정  
2021. 3. 2. 개 정  
2024. 2. 1. 개 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(이하 “장애인육상연맹”이라 한다)의 임·직원과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육상연맹의 명을 받아 공무여행을 하는 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‘21.3.2>

**제2조 (여비의 종류)**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.

**제3조 (여비의 계산)**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**제4조 (여행일수의 계산)**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.

**제5조 (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)**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**제6조 (여비의 구분계산)** ① 여행도중 관계규정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다만, 당해 임원 및 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  
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.

**제7조 (간호자 여비)**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출장중 사고)**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.

**제9조 (현장체재비)** ① 공사감독 등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거나 장기 체재하는 직원에게는 현장체재비를

지급한다.

- ② 현장체재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2장 운임

**제10조 (운임의 구분)** ① 운임은 철도운임 · 선박운임 · 항공운임 ·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, 철도운임은 철도 여행에,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,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,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.  
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 1 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.

**제11조 (철도운임의 지급)**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.

-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.
1.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
  2.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
  3.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

**제12조 (선박운임의 지급)**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

- ② 국외 선박운임(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.
1.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
  2.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
  3.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

**제13조 (항공운임의 지급)** 항공운임은 국내의 경우 별표 1, 국외는 별표2에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
**제14조 (자동차운임의 지급)**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 
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.

**제15조 (실비운임)**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6조 (운임지급의 제한)** 장애인육상연맹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 <개정 ‘21.3.2>

## 제3장 일비 · 숙박비 및 식비

**제17조 (일비 · 숙박비 · 식비의 지급)**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 ·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1,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(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

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장애인육상연맹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 <개정 ‘21.3.2.>

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.

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.

**제18조 (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)**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,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  
② 제 1 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.

**제19조 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**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,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장애인육상연맹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장애인육상연맹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. <개정 ‘21.3.2.>  
② 제 1 항에서 “근무지내 국내출장”이라 함은 동일시(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)·군 및 도서(제주도를 제외한다)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

#### 제 4 장 퇴직자·사망자 등의 여비

**제20조 (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)** ① 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 까지의 그 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  
② 제 1 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21조 (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)**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그 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

**제22조 (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)** ① 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.  
② 임원 및 직원이 외국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여행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.  
③ 제 2 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해당자의 여비를 제 8 조 및 제15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,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.  
④ 외국여행중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회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 8 조 및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

#### 제 5 장 보 칙

**제23조 (여비의 조정)**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.  
③ 2인 이상의 임원 및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(국외여비를 제외한다)·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4조 (여비지급의 특례)** ① 회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 
② 장애인 직원이 본인 소유차량으로 출장여행을 하는 경우 그 유류비를 실비로 지급한다.  
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2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25조 (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)** ①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 
②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육상연맹의 명을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사람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의 경우,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항공운임을 비즈니스석 요금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 
<개정 ‘21.3.2.’>

**제26조 (부대비)** 국내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예방주사료
2. 여권교부 수수료
3. 사증수수료
4. 출입국세

## 부 칙(‘20.9.14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‘21.3.2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‘24.2.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‘21.3.2., ‘24.2.1.>

**여비정액표(제10조부터 제17조관련)**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					
명예회장	특실	1등급	비지니스	정액	20,000	실비	25,000						
고 문													
회 장	일반실	2등급	이코노미	정액	20,000	특별시 100,000 광역시 80,000 기타도 70,000	25,000						
부회장													
이 사													
사무국장													
직 원													
기타직													
각종 위원													

1. 별표 1에서 말한 ‘실비’란 실질적으로 공무에 이용된 차량에 사용된 주유 또는 충전비를 말한다.

[별표 2] <개정 ‘21.3.2.>

**국외여비정액표(제17조제1항관련)**

(단위 : US달러)

구 분	항공운임	일 비	숙박비	식 비			
명예회장	비즈니스 정액	50	실비	70			
고 문							
회 장	이코노미 정액	50	실비	50			
부회장							
이 사							
사무국장							
직 원							
기타직							
각종 위원							

1. 별표 2에서 말한 ‘실비’란 실질적으로 공무에 필요한 차량 이용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.